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. 4. 30 선고 2014가단279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15. 3. 5.

판결 선고2015. 4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/7 지분에 관하여,
가. 공주시 F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46.94㎡,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3.14㎡, 흙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10.24㎡를 철거하고,
나. 공주시 F 대 486㎡를 인도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와 G, H, I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)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D, E에 대하여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B, C에 대하여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신동준

별지